

##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38
----------	-----

### 제안이유

- 중복 또는 유사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.

### 주요골자

- 제30조 삭제

### 첨 부

-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##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<p>제3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</p> <p>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, 운영등에 관</p> <p>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(삭	제)	